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9월 16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9월 6일, 도병두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9월 1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도병두 의원)

가. 개정이유

-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의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의 인영을 “한글 전서체”에서 “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모양”으로 개정하여,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본문 중 “한글 전서체”를 “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모양”으로 변경함(제5조)
-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둠
 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공인(전자 이미지공인 포함)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.
 - ③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중인 공인(전자이

미지공인 포함)은 구보에 공고된 것으로 본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금천구 공인의 인영을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글자체를 알아보기 힘든“한글 전서체”에서 “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모양”으로 변경함으로써,
- 훈민정음의 아름다움을 공인에 담아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공인이 구민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어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